

충청북도인사위원회공고 제2021-11호

2021년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공고

2021년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.

2021년 3월 19일
충청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선발예정인원

시험명	계급	직 렬	직 류	선발예정인원	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
총 계				1,151	
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	소 계			56	
	8급	간 호	간 호	46	충청북도6, 청주7, 제천12, 보은2, 옥천5, 영동5, 증평1, 진천4, 괴산2, 단양2
		보건진료	보 건 진 료	10	청주1, 충주2, 보은2, 괴산2, 단양3
	소 계			1,073	
	9급	행 정	일 반 행 정	445	충청북도66, 청주130, 충주51, 제천46, 보은12, 옥천24, 영동27, 증평12, 진천27, 괴산5, 음성7, 단양38
			일 반 행 정 (장 애 인)	53	충청북도7, 청주18, 충주4, 제천1, 보은2, 옥천3, 영동2, 증평4, 진천2, 괴산2, 음성7, 단양1,
			일 반 행 정 (저소득층)	17	충청북도2, 청주4, 충주2, 제천2, 보은1, 옥천2, 영동1, 진천1, 괴산1, 단양1
		세 무	지 방 세	13	충청북도1, 청주2, 충주2, 제천3, 옥천2, 진천1, 괴산1, 음성1
			지 방 세 (장 애 인)	2	제천1, 음성1
		전 산	전 산	17	충청북도7, 청주5, 충주1, 제천2, 보은1, 단양1
			전 산 (장 애 인)	1	충청북도1
		사 회 복 지	사 회 복 지	54	충청북도6, 청주16, 제천14, 보은1, 옥천5, 영동3, 진천7, 괴산1, 음성1
			사 회 복 지 (장 애 인)	9	충청북도1, 청주2, 제천1, 증평3, 진천1, 음성1
			사 회 복 지 (저소득층)	3	청주2, 제천1
		사 서	사 서	13	청주3, 제천3, 영동1, 진천3, 음성3
			사 서 (장 애 인)	1	제천1
		공 업	일 반 기 계	32	충청북도7, 청주12, 충주2, 제천4, 보은1, 옥천2, 영동2, 단양2
			농 업 기 계	3	증평1, 단양2
			일 반 전 기	22	충청북도6, 청주5, 제천5, 증평1, 진천1, 단양4
일 반 화 공			17	충청북도8, 청주4, 충주3, 괴산2	

시험명	계급	직 렬	직 류	선발예정인원	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
제 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	9급	농 업	일 반 농 업	39	충청북도12, 청주14, 충주1, 제천5, 옥천4, 진천1, 괴산2
			축 산	13	충청북도1, 청주5, 충주1, 제천2, 보은1, 괴산2, 단양1
		녹 지	산 림 자 원	17	충청북도5, 청주2, 보은1, 옥천4, 진천2, 괴산2, 단양1
			조 경	7	청주1, 충주1, 제천2, 괴산2, 교육청1
		보 건	보 건	48	충청북도8, 청주15, 충주5, 제천5, 옥천4, 증평1, 진천6, 괴산2, 단양2
			보 건 (장 애 인)	1	제천1
		식품위생	식품 위 생	3	충청북도1, 청주1, 음성1
		환 경	일 반 환 경	25	충청북도4, 청주5, 제천5, 보은2, 옥천1, 진천3, 괴산3, 음성1, 단양1
		시 설	도 시 계 획	2	청주2
			일 반 토 목	117	도일괄 (충청북도17, 청주13, 충주24, 제천15, 보은4, 옥천3, 영동5, 증평2, 진천6, 괴산12, 음성4, 단양12)
			일 반 토 목 (저 소 특 층)	5	충청북도2, 충주1, 진천1, 음성1
			건 축	51	도일괄 (충청북도6, 청주10, 제천10, 보은1, 옥천1, 영동3, 진천5, 괴산3, 음성2, 단양10)
			지 적	23	충청북도1, 청주6, 충주3, 제천3, 보은1, 옥천2, 영동1, 진천1, 괴산1, 음성1, 단양3
			방 재 안 전	방 재 안 전	8
방 송 통 신	통 신 기 술	12	도일괄 (충청북도4, 청주2, 제천2, 옥천1, 괴산1, 음성1, 단양1)		
제 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	소 계			22	
	7급	행 정	일 반 행 정	5	충청북도5
	9급	방 호	방 호	1	제천1
운 전		운 전	16	청주2, 제천3, 영동1, 괴산3, 음성4, 단양3	

※ 비 고

- 1) ‘모집단위’란 ‘계급-직렬-직류-임용예정기관’의 구분을 말하고, 임용시험은 모집단위별로 실시되며, **응시자격을 반드시 확인**하시기 바랍니다.

< 임용예정기관 >

- 충청북도: 도의 결원현황에 따라 일부 임용후보자는 사군으로 임용추천 될 수 있습니다.
- 도 일 괄: 충청북도인사위원회가 일괄 선발하고, 임용후보자를 도, 시·군의 결원상황에 따라 배분하여 추천하는 것으로, 추천받은 기관이 임용예정기관이 됩니다.
- 교 육 청: 충청북도교육감이 임용하며, 임용예정기관은 도교육청 또는 도교육청 산하 기관입니다.

- 2) 최종합격한 사람은 임용예정기관에서 신규임용 후 「지방공무원법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전보·전출이 제한됩니다.

2. 시험 과 목

(비공개 시험과목: 굵게 밑줄)

시험명	계급	직렬	직류	시험과목	
제1회 공개 경쟁 임용 시험	8급	간 호	간 호	국어, 영어, 한국사, 간호관리, 지역사회간호	
		보건진료	보 건 진 료	국어, 영어, 한국사, 지역사회간호, 공중보건	
	9급	행 정	일 반 행 정	필수(3): 국어, 영어, 한국사 선택(2): 행정법총론, 행정학개론(지방행정 포함), 사회, 과학, 수학 중 2과목	
		세 무	지 방 세	필수(3): 국어, 영어, 한국사 선택(2): 지방세법, 회계학(회계원리,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), 행정학개론(지방행정 포함), 사회, 과학, 수학 중 2과목	
		전 산	전 산	국어, 영어, 한국사, 컴퓨터일반, 정보보호론	
		사 회 복 지	사 회 복 지	필수(3): 국어, 영어, 한국사 선택(2): 사회복지학개론, 행정법총론, 사회, 과학, 수학, 행정학개론(지방행정 포함) 중 2과목	
		사 서	사 서	필수(3): 국어, 영어, 한국사 선택(2): 자료조직개론, 정보봉사개론, 사회, 과학, 수학, 행정학개론(지방행정 포함) 중 2과목	
		공 업	일 반 기 계	국 어, 영 어, 한 국 사, 기 계 일 반, 기 계 설 계	
			농 업 기 계	국 어, 영 어, 한 국 사, 농업동역학개론, 농작업기계학개론	
			일 반 전 기	국 어, 영 어, 한 국 사, 전 기 이 론, 전 기 기 기	
			일 반 화 공	국 어, 영 어, 한 국 사, 화 학 공 학 일 반, 공 업 화 학	
		농 업	일 반 농 업	국 어, 영 어, 한 국 사, 재 배 학 개 론, 식 용 작 물	
			축 산	국 어, 영 어, 한 국 사, 가축사양, 가축육종	
		녹 지	산 림 자 원	국 어, 영 어, 한 국 사, 조 림, 임 업 경 영	
			조 경	국 어, 영 어, 한 국 사, 조경학,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	
		보 건	보 건	국 어, 영 어, 한 국 사, 공중보건, 보건행정	
		식 품 위 생	식 품 위 생	국 어, 영 어, 한 국 사, 식품위생, 식품화학개론	
		환 경	일 반 환 경	국 어, 영 어, 한 국 사, 화 학, 환 경 공 학 개 론	
		시 설	도 시 계 획	국 어, 영 어, 한 국 사, 도시계획개론, 토지이용계획	
			일 반 토 목	국 어, 영 어, 한 국 사, 응 용 역 학 개 론, 토 목 설 계	
	건 축		국 어, 영 어, 한 국 사, 건 축 계 획, 건 축 구 조		
	지 적		국 어, 영 어, 한 국 사, 지 적 측 량, 지 적 전 산 학 개 론		
	방 재 안 전	방 재 안 전	국 어, 영 어, 한 국 사, 재 난 관 리 론, 안 전 관 리 론		
	방 송 통 신	통 신 기 술	국 어, 영 어, 한 국 사, 통신이론, 전자공학개론		
	제2회 공개 경쟁 임용 시험	7급	행 정	일 반 행 정	필수(6): 국어(한문 포함), 헌법, 행정법, 행정학, 영어(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), 한국사(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) 선택(1): 경제학원론, 지방자치론, 지역개발론 중 1과목
			방 호	방 호	국어, 한국사, 사회
		9급	운 전	운 전	국어, 한국사,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

※ 비 고

- 1) 각 과목은 20문항씩이며, 4지 택1형으로 100점 만점입니다.
- 2) 시험시간은 각 과목별 20분입니다.
- 3)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행정·세무·사회복지·사서 직렬의 경우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.
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50조의2 및 「별표 10」참고)
- 4) **인사혁신처에 위탁출제**가 가능한 시험과목은 위탁 출제하며, 인사혁신처에서 공개로 설정한 시험과목만 시험종료 후 본인의 문제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. 시험문제 출제범위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사회는 '정치와 법, 경제, 사회·문화', 과학은 '물리학 I, 화학 I, 생명과학 I, 지구과학 I', 수학은 '수학 I, 수학 II, 확률과 통계, 수학'에서 출제됩니다.

- 5) **충청북도에서 자체출제**하는 시험과목은 비공개로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회수하며, 문제 등을 응시표 등에 옮겨 적거나 배포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※ 충청북도에서 출제하는 비공개 시험과목은 **굵게 밑줄**로 표기하였습니다.
>

3. 시험 방법

시험명	1차 시험	2차 시험	3차 시험	비 고
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	선택형 필기시험 (1·2차 병합실시)		면접시험	운전9급 은 3차 시험에 실기시험(대형버스운전)이 포함됨

※ 비 고

- 1) 전(前) 단계의 시험에 합격해야만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- 2)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하며,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시 반영합니다.
- 3) **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기준**은 각 과목에서 40%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**선발예정인원의 110%를 필기시험합격자로 결정**합니다.
※ 선발예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1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함.
- 4)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·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일정 등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.
- 5) 각 단계별 시험의 합격자는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, 「지방공무원 균형 인사 운영지침」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합니다.

4. 응시 자격

가. 응시연령

구 분	응시연령	해당 생년월일
8급, 9급	18세 이상	2003. 12. 31. 이전 출생자
7급	20세 이상	2001. 12. 31. 이전 출생자

나. 거주지(주민등록상 주소지) 제한

-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합니다.
 - 1.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(면접시험 최종예정일)까지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
(단,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)
 - 2.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,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
- ※ 아래의 경우 표와 같이 별도의 거주지 요건을 적용합니다.

시험명	직렬(직류)	임용예정기관	거주지 요건
제1회 공개경쟁	행정9급 (일반행정) [일반모집]	충주, 제천, 보은, 옥천, 영동, 증평, 괴산, 음성, 단양	1.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(면접시험 최종예정일)까지 계속하여 임용예정기관의 해당 시·군 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(단,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) 2.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, 임용예정기관의 해당 시·군 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
	공업9급 (농업기계)	증평, 단양	제한없음(전국모집)

※ 거주지 요건 확인 기준

- 1)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“개인별주민등록표” 를 기준으로 합니다.
- 2) 행정구역의 통·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·도, 시·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,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(月)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(잔여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합산)이면 충족합니다.

예시: 「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에 따라 관할구역이 종전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제외되어 세종특별자치시로 된 지역(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라·행산라·갈산라·부강라·문곡라·금호라·등곡라·노호리 일원)의 거주경력은 충청북도 거주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
- 3) 재외국민(해외영주권자)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.

다. 응시결격사유 등

-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(면접시험 최종예정일) 현재를 기준으로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거나, 동법 제66조(정년)에 해당하는 자 또는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§ 지방공무원법

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제66조(정년)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.

§ 지방공무원 임용령

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
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 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- ② <생략>

§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

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1. 공공기관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 - 가. ~ 아. <생략>
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
- ③ ~ ④ <생략>

제89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) 제82조제1항의 비위면직자 등이 같은 조 제2항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라. 자격·면허 응시자격(기준일: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)

시험명	계급	직 렬	직 류	응시자격
제 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	8급	간 호	간 호	조산사, 간호사
		보건진료	보건진료	조산사, 간호사
	9급	전 산	전 산	·기 술 사 : 컴퓨터시스템응용, 정보통신, 정보관리 ·기 사 : 전자계산기, 정보통신, 정보처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, 정보보안 ·산업기사 : 전자계산기제어, 정보통신, 사무자동화, 정보처리, 정보보안 ·기 타 :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
		사회복지	사회복지	사회복지사1급, 사회복지사2급, 사회복지사3급
		사 서	사 서	1급 정사서, 2급 정사서, 준사서
		시 설	지 적	지적기술사, 지적기사, 지적산업기사
제 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	9급	운 전	운 전	제1종운전면허(대형)

※ 비 고

- 1) 응시에 필요한 자격·면허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.
- 2) 자격·면허증 등의 유효(소지)여부는 신청일이 아닌 발급(취득)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3) 자격·면허증 등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내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4)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 가능한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.

마.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

- 1)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.
- 2) **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**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,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3)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 등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내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4)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. (단, 중복접수를 할 수 없음)

바.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

- 1)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(생계, 주거, 교육, 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)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(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)이 **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**이어야 합니다.
- 2) 응시자가 군복무(현역, 대체복무)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,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(지원)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(지원대상자)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(지원대상자)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. 다만,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(지원대상자)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. 이 경우 급여(지원)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, 급여(지원)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합니다.
 - ※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·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(지원대상자)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봅니다. [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(지원대상자)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, 이 경우 **급여(지원)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, 급여(지원)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합니다.**]
 - ※ 단,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(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)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3) 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와 수급·지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등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내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4)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. (단, 중복접수를 할 수 없음)

사. 기 타: 성별은 제한 없습니다.

5.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

시험명	접수기간 (취소마감일)	가산점 등록기간	구 분	시험장소 공 고	시험일자	합격자 발 표
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	3.29(월)~4. 2(금) (4. 5.월)	6. 5.(토) ~6. 9.(수)	필기시험	5. 21.(금)	6. 5.(토)	7. 9.(금)
			면접시험	7. 9.(금)	7. 27.(화)~8. 6.(금)	9. 3.(금)
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	7. 5.(월)~7. 9.(금) (7.12.월)	10.16.(토) ~10.20.(수)	필기시험	9. 17.(금)	10. 16.(토)	11. 5.(금)
			면접시험	11. 5.(금)	11.23.(화)~11.26.(금)	12.10.(금)

※ 비 고

- 1) 시험장소와 각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「충청북도 시험·채용 홈페이지」(<https://sihum.chungbuk.go.kr>)에 공고하고, 개별통보(문자, 전화 등)는 하지 않습니다.
- 2) 필기시험 성적조회는 실제 시험에 응시한 본인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지정한 열람기간 동안 「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」에서 조회 가능합니다.
- 3)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해당 시험의 가산점 등록기간 내에 가산 해당사항(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등, 자격·면허증의 종류와 증명번호 등)을 등록해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4)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, 면접시험 일정을 포함한 시험장소, 시험방법 등 면접시험 절차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공고할 예정입니다.
- 5)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, 시험장 사정,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할 예정입니다.

6. 응시원서 접수(인터넷 접수만 가능)

가. 접수방법 및 시간

- 1) 접수방법: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s://local.gosi.go.kr>)에서 접수
 - ※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(1522-0660)
 - ※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(응시수수료 결제완료 등) 하여야 하며,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.
- 2) 접수시간
 -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: 3.29(월) 09:00 ~ 4. 2(금) 18:00
 -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: 7. 5(월) 09:00 ~ 7. 9(금) 18:00
 - ※ 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 가능

나. 응시수수료

1) 응시수수료: 7급 7,000원 / 8-9급 5,000원

※ 저소득층(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)은 응시수수료를 면제

2) 응시수수료의 환급: 다음의 경우 응시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

-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
-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
-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(취소마감일 내)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

※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(신용카드 결제, 휴대전화 결제, 계좌이체 비용 등)이 소요되며, 이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
다.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

1) 전국 동시 시행되는 6. 5. 및 10. 16.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중복접수가 불가하며, 반드시 1개의 지방자치단체만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.

※ 서울특별시 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 경우, 중복 지방직 원서접수 불가

서울특별시 원서접수 기간: (6. 5.시험) 2021. 3. 2. ~ 3. 5. (10. 16.시험) 2021. 8. 3. ~ 8. 6.

2) 충청북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.

3)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,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, 모자,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않은 개인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.

- 합격 후 임용후보자 등록 시 동일원판 사진이 사용되니 규격에 맞는 사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- 본인식별이 어려운 사진일 경우 신분확인을 위한 별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(JPG)이 필요하며 접수마감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.

※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(JPG)규격: 해상도 100dpi 이상, 3.5cm×4.5cm기준

4) 원서접수 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결제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모집단위(응시직렬 등)는 변경이 불가하며, 모집단위(응시직렬 등)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결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합니다.

5) 장애인·임신부 등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응시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, 구비서류 등은 **[붙임 1] '장애유형별(임신부 포함) 편의지원 제공안내'**를 확인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편의지원 신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7. 영어, 한국사 시험과목 대체(7급 공개경쟁)

가.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

1) 기준점수

구 분	토플(TOEFL)		토익 (TOEIC)	텡스(TEPS)		지텔프 (G-TELP)	플렉스 (FLEX)
	PBT	IBT		2018. 5. 12. 전 시험	2018. 5. 12. 이후 시험		
일 반	530	71	700	625	340	65(Level 2)	625
청각장애인	352	-	350	375	204	-	375

※ 청각장애의 정도가 ‘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(기존 청각장애 2·3급)’ 이거나, ‘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% 이하’ 인 응시자의 경우,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. (해당자는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)

2)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

- 2016. 1. 1.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, 필기시험 실시일 전날까지 점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.
- 2016. 1. 1.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, 일본에서 응시한 TOEIC, 미국에서 응시한 G-TELP는 필기시험 실시일 전날까지 점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.
- 다만,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(TOEFL, TOEIC, TEPS, G-TELP)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,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s://local.gosi.go.kr>)를 통해 사전등록 해야 합니다.

※ 사전등록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, 정부기관·민간회사·학교 등에서 승진·연수·입사·입학(졸업)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·특별 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
3) 성적제출 방법

-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, 등록번호,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,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합니다.
- 응시원서 접수 후 발표된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s://local.gosi.go.kr>)를 통해 필기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.

[추가등록기간: 2021.10.1.(금) ~ 10.15.(금)]

나.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

- 1) 기준점수: 한국사능력검정시험(국사편찬위원회 주관) 2급 이상
- 2) 인정범위: 2016. 1. 1.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, ‘필기시험 실시일 전날’ 까지 점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,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합니다.
 ※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, 정부기관·민간·회사·학교 등에서 승진·연수·입사·입학(졸업)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
- 3) 성적제출 방법: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 시험일자, 인증번호, 인증등급 등을 등록
 ※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달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사전등록이 불필요합니다.
 ※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(2021. 10. 15.)까지 발표된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s://local.gosi.go.kr>)를 통해 추가등록 해야 합니다. [추가등록기간: 2021.10.1.(금) ~ 10.15.(금)]

8. 양성평등 채용목표제

가. 적용시험: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

나. 채용목표인원: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%를 곱한 인원수

- ※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이하 반올림하며,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이하 버림

다. 합격자 결정방법: 어느 한 성(性)의 합격자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하고, 합격선 -3점(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-3점을 곱한 점수) 이상인 해당 성(性)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.

- ※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(性)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(性)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니며,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「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(행정안전부 예규)」에 따릅니다.

9.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

가. 적용대상 :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

나. 합격자 결정방법: 모집단위별 일반모집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「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」에 따라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처리할 수 있습니다. (일반모집 인원이 없는 경우 초과합격제 미적용)

- ※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전년도 선발인원이 증가한 경우 당해연도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시 초과합격제를 미적용할 수 있음

10.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

가.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

구 분	가산비율	비 고
취업지원대상자	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10%	·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
의사상자 등	과목별 만점의 3% 또는 5%	· 취업지원대상자(또는 의사상자 등)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
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	과목별 만점의 3% 또는 5%	·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은 유리한 것 1개만 적용 ※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'나~마' 참고

나. 취업지원대상자(필기시험시행 전날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)

- 1)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9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3조,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만점의 40%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(5%, 10%)을 가산합니다.
- 2) 가산점수를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- 3)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(국가보훈처 상담센터 ☎1577-0606)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다. 의사상자 등(필기시험시행 전날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)

- 1) 「지방공무원법」제34조의2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56조에 의한 의사상자 등(의사자 유족, 의상자 본인 및 가족)은 각 과목별 만점의 40%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(3%, 5%)을 가산합니다.
- 2) 가산점수를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1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- 3)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(044-202-3255)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4)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가 '나' 항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도 받을 수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가산합니다.

라.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(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)

1) 직렬(직류)별 가산점

- 가) 해당 분야의 자격·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(직류)은 제외
- 나) 행정직군

아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 중 각 과목에서 40% 이상 득점한 사람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%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
직 렬(직 류)	인정대상 자격증	가산비율
행 정(일반행정)	변호사, 변리사	5%
사회복지(사회복지)	변호사	
세 무(지 방 세)	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	

다) 기술직군

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 중 각 과목에서 40% 이상 득점한 사람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일정비율(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
(가산대상자격증의 종류는 [붙임2] 직렬(직류)별 가산 대상 자격증 참고)

구 분	8급 및 9급	
	기술사, 기능장, 기사, 산업기사	기능사
가산비율	5%	3%

※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.

마.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

- 1)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- 2)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(가산점 등록기간)에 「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」(<https://local.gosi.go.kr>)에 접속하여 가산비율을 확인하고, 취업지원(의사상자 등)여부, 보훈(증서)번호, 가산비율, 자격증종류, 자격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합니다.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.
- 3) 해당 시험의 가산점 등록기간 내에 미등록(신청)한 경우에는 본인이 가산특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처리 됩니다.(필기시험의 답안지에는 가산점 포기란이 없습니다.)
- 4) 취업지원대상자(또는 의사상자 등) 가산점, 직렬별로 적용되는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.

11. 그 밖의 응시자 유의사항

- 가. 본 시행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 까지 변경내용을 충청북도 시험·채용 홈페이지(<https://sihum.chungbuk.go.kr>)에 공고합니다.
- 나. 시험 시행에 관한 모든 사항은 충청북도 시험·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,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다. 임용시험은 모집단위별로 실시됩니다.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등 관계법규에 따라 결정됩니다.
- 라. 접수된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, 연락 불능, 응시자 유의사항 미준수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마. 임용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- 바. 시험시행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확인이나 신원조회 및 공무원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가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.
- 사.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